



인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이 학대받지 않는 사회
장애인의 평등하고 자주적인 삶



장애인학대 신고전화
1644-8295

주최  보건의복지부  인천광역시
주관  인천대학교 사회복지복지대학원  인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에 의해 설치되는 공적 기관이자 모든 유형의 장애인을 위한 최초의 보편적 권익옹호기관으로서 2017년 8월 24일부터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업무>

- (가) 장애인학대 사례지원
-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조치(응급보호, 인도기관 인도)
 -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구성, 운영
 -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 피해장애인의 피해 회복 지원,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모니터링 실시

- (나) 유관기관 간 업무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
- 피해장애인의 피해회복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
 -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 (다) 장애인 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수행
- 지역주민, 장애인/비장애인, 신고의무자 직업군, 관련종사자대상 예방 교육
 - 홈페이지 제작 운영(홍보 및 온라인 신고)
 - 장애인 학대 신고전화(1644-8295) 운영

- (라)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보고 및 업무협력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면
어느 곳 어느 누구라도 달려가겠습니다.

학대신고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항에서는 ‘장애인학대’를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유형	내용
신체적 학대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정신적 학대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정신적, 정서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성적 학대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공적 급여를 포함한 재산의 갈취 및 편취, 노동력의 착취, 재산 관리나 금전 거래에서 장애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유기·방임	자신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버리거나 자신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2항의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학대 신고하는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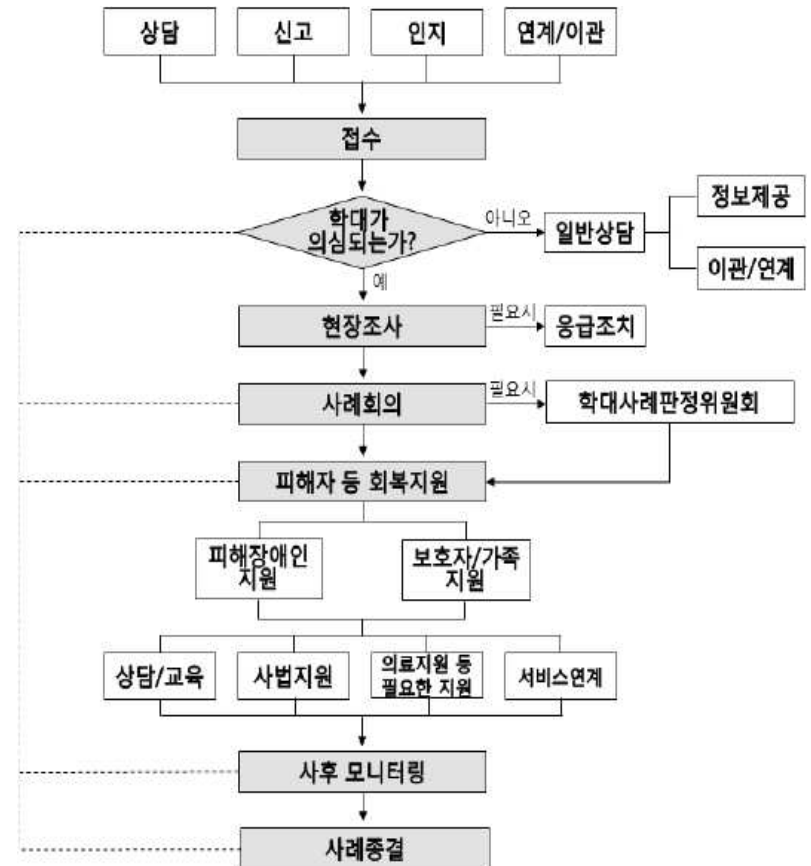
☞ 내방에 의한 상담(월~금, 9:00~18:00)

☞ 장애인학대 신고, 상담, 문의 전화

(언제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국번없이)1644-8295

☞ 홈페이지(<http://www.icaapd.or.kr>)-학대신고-학대신고하기

학대신고 절차



찾아오시는 길



● 승용차 이용시

주소 : 인천시 남구 주안6동 989-1 르네상스 타워 1801호

경인고속도로 : 도화IC→주안역→가정병원→석바위사거리 100m

서해안고속도로 : 제2경인고속도로 문학동IC→신기 사거리→석바위사거리
100m

● 버스 이용시

- 석바위 정류장

간선 2번, 8번, 15번, 21번, 23번, 33번, 63번 **좌석** 800번

지선 516번, 518번, 523-1번

지행 8848번 **광역** 790번, 1601번, 9100번

- 석바위시장 정류장

지선 516번, 540번, 566번 **간선** 3-2번, 23번, 28-1번, 35번, 38번

● 지하철 이용시

- 인천지하철 2호선 석바위시장역 - 지하상가 5번 출구 도보 3분